

2020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회의명	대학평의원회	개최일시	2020. 04. 17.(금) 14:00~16:00				
		장소	60주년기념관 대학본부동 201호				
안건		1.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의 2. 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안) 심의 3. 화랑장학회 규정 개정(안) 심의 4. 감염병 관리 규정 제정(안) 심의 5. 학사규정 개정(안) 심의 6.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 규정 제정(안) 심의 7.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 심의 8. 취·창업 지원활동 수당 지급 규정 개정(안) 심의 9. 2019학년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결산(안) 자문 10. 기타사항					
참석자 (인원수)		○ 의원(10명) : 김순호, 황덕현, 김세윤, 강창우, 박용준, 김현철, 하배진, 최예나, 최요한, 이영석 ○ 간사(1명) : 김대식					
결석자 (인원수)		○ 의원(1명) : 유철상					
회의내용 및 결과		<p>1. 2020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개최선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은 재적의원 11명 중 10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개최를 선언함. <p>2. 안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의 -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함. - 학생상담센터 소장(김윤희)이 참석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함. - 의장은 의원들과 상호 논의한 결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자구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참석의원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상정안</th> <th>수정안</th> </tr> </thead> <tbody> <tr> <td>제6조(구성) ①~③ (생략) ③ 상담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u>총장의 명을 받아</u> 상담실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총괄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인사 담당자 또는 직원, 학생상담센터 전임상담원을 포함하</td> <td>제6조(구성) ①~③ (생략) ③ 상담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상담실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총괄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인사 담당자 또는 직원, 학생상담센터 전임상담원을 포함하</td> </tr> </tbody> </table>		상정안	수정안	제6조(구성) ①~③ (생략) ③ 상담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u>총장의 명을 받아</u> 상담실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총괄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인사 담당자 또는 직원, 학생상담센터 전임상담원을 포함하	제6조(구성) ①~③ (생략) ③ 상담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상담실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총괄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인사 담당자 또는 직원, 학생상담센터 전임상담원을 포함하
상정안	수정안						
제6조(구성) ①~③ (생략) ③ 상담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u>총장의 명을 받아</u> 상담실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총괄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인사 담당자 또는 직원, 학생상담센터 전임상담원을 포함하	제6조(구성) ①~③ (생략) ③ 상담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상담실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총괄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인사 담당자 또는 직원, 학생상담센터 전임상담원을 포함하						

김순호	강창우	최요한
-----	-----	-----

<p>여 2명 이상으로 하며, 성 고충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p> <p>⑤ 고충상담원은 상담심리 혹은 교육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전공자로서 성폭력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성상담과 관련된 분야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p>	<p>여 1명 이상으로 하며, 성 고충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p> <p>⑤ 고충상담원은 상담심리 혹은 교육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전공자로서 성폭력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성상담과 관련된 분야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의의 건이 일부 수정 후 통과되었음을 선언함. 	

나. 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안) 심의

- 의장은 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함.
- 학생지원처장(이범진)이 참석하여 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함.
- 의장은 의원들과 상호 논의한 결과 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자구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참석의원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

상정안	수정안
<p>제20조(화랑 장학금) ① (생략)</p> <p>② 화랑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u>수능 우수 화랑 장학</u></p> <p>3~7. (생략)</p>	<p>제20조(화랑 장학금) ① (생략)</p> <p>② 화랑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u>수능성적우수 화랑 장학</u></p> <p>3~7. (생략)</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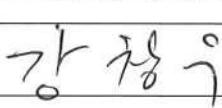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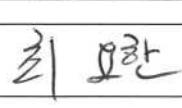
- 의장은 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안) 심의의 건이 일부 수정 후 통과되었음을 선언함.

다. 화랑장학회 규정 개정(안) 심의

- 의장은 화랑장학회 규정 개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함.
- 학생지원처장(이범진)이 화랑장학회 규정 개정(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함.
- 의장은 의원들과 상호 논의한 결과 화랑장학회 규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자구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참석의원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

상정안	수정안
<p>제2조(장학종류) 이 회가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u>수능 우수 화랑 장학</u></p> <p>3~6. (생략)</p>	<p>제2조(장학종류) 이 회가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u>수능성적우수 화랑 장학</u></p> <p>3~6. (생략)</p>

- 의장은 화랑장학회 규정 개정(안) 심의의 건이 일부 수정 후 통과되었음을 선

		
---	---	---

언함.

라. 감염병 관리 규정 제정(안) 심의

- 의장은 감염병 관리 규정 제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함.
- 학생지원처장(이범진)이 감염병 관리 규정 제정(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함.
- 의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의원들 간 상호 논의한 결과 참석의원 전원이 원안에 이의 없이 찬성함.
- 의장은 감염병 관리 규정 제정(안) 심의의 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함.

마. 학사규정 개정(안) 심의

- 의장은 학사규정 개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함.
- 교육지원처장(김영일)이 참석하여 학사규정 개정(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함.
- 의장은 의원들과 상호 논의한 결과 학사규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자구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참석의원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

상정안	수정안
제51조(성적처리) ①~③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학교운영상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해 성적처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불가능 할 경우, 성적등급의 비율은 총장이 따 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성적처리) ①~③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학교운영상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해 성적처리의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할 경 우, 성적등급의 비율은 총장이 따로 정 할 수 있다.

- 의장은 학사규정 개정(안) 심의의 건이 일부 수정 후 통과되었음을 선언함.

바.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 규정 제정(안) 심의

- 의장은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 규정 제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함.
- 사무처장(강창우)이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 규정 제정(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함.
- 의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의원들 간 상호 논의한 결과 참석의원 전원이 원안에 이의 없이 찬성함.
- 의장은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 규정 제정(안) 심의의 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함.

사.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 심의

- 의장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 심의의 건을 재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함.
- 사무처장(강창우)이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함.
- 의장은 의원들과 상호 논의한 결과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자구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참석의원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

기수호

강창우

최요한

상정안	수정안
<p>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u>교원 2명(교수평의원회 대표)</u>, 직원 2명(노동조합 대표), 조교 1명(조교 대표)을 포함한 <u>5명</u>으로 구성한다.</p> <p>②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총장, 기획부총장, 교학부총장, 사무처장, 재무처장을 포함한 <u>5명</u>으로 구성한다.</p> <p>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u>교원 3명(교수평의원회 대표)</u>, 직원 2명(노동조합 대표), 조교 1명(조교 대표)을 포함한 <u>6명</u>으로 구성한다.</p> <p>②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총장, 기획부총장, 교학부총장, <u>학생지원처장</u>, 사무처장, 재무처장을 포함한 <u>6명</u>으로 구성한다</p> <p>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u>조교 위원의 임기는 최대 2년으로 한다.</u></p>
<u>부칙</u> <p>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 우리 대학교와 전국대학노동조합 신라대지부 간의 단체협약 제13장은 이 규정으로 대체한다.</p>	<u>부칙</u> <p>(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삭제></u></p>
<p>- 의장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 심의의 건이 일부 수정 후 통과되었음을 선언함.</p>	

아. 취·창업 지원활동 수당 지급 규정 개정(안) 심의

- 의장은 2019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원회(2019.4.3.) 기타사항(대학평의원회의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 주요 규정이 아닌 경우 사전심의로 갈음할 수 있음)에 근거하여, 취·창업 지원활동 수당 지급 규정 개정(안)을 사전 심의하였음을 안내함.
- 이에 대하여 참석의원 전원도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취·창업 지원활동 수당 지급 규정 개정(안) 심의의 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함.

자. 2019학년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결산(안) 자문

- 의장은 2019학년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결산(안) 자문의 건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함.
- 재무처장(김진섭)이 참석하여 2019학년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결산(안) 관별 자료 및 자금계산서를 중심으로 수입, 지출에 대비하여 상세히 설명함.

○ 관별대비표

(수입)

(단위 : 천원)

관 별	예 산 액	결 산 액	구성비	비 고	
				증	감
등록금 수입	63,016,943	62,899,183	61.84%	-	117,760
전입금 및 기부수입	28,542,424	28,294,209	27.82%	-	248,215
교육부대수입	4,444,313	4,315,069	4.24%	-	129,244

기수

기자

회원

교육외 수입	516,576	548,886	0.54%	32,310	-
투자와기타자산수입	1,084,007	1,019,800	1.00%	-	64,207
고정자산매각수입	8	604	0.00%	596	-
고정부채입금	2,037,002	39,700	0.04%	-	1,997,302
합 계	99,641,273	97,117,451		32,906	2,556,728
전기이월자금	4,597,594	4,597,594	4.52%	-	-
자금수입총계	104,238,867	101,715,045	100%	32,906	2,556,728

(지출)

(단위 : 천원)

관 별	예 산 액	결 산 액	구성비	비 고	
				증	감
보 수	41,534,709	41,263,402	40.57%	-	271,307
관리운영비	11,897,961	10,837,251	10.65%	-	1,060,710
연구·학생경비	38,117,055	37,510,970	36.88%	-	606,085
교육외비용	513,426	481,788	0.47%	-	31,638
전출금	-	-	0.00%	-	-
예 비 비	483,347	-		-	483,347
투자와기타자산지출	1,044,385	809,060	0.80%	-	235,325
고정자산매입지출	7,178,084	4,631,255	4.55%	-	2,546,829
유동부채상환	2,804,000	2,804,000	2.76%	-	-
고정부채상환	665,900	151,851	0.15%	-	514,049
합계	104,238,867	98,489,577		-	5,749,290
차기이월자금		3,225,468	3.17%	3,225,468	-
자금지출총계	104,238,867	101,715,045	100%		5,749,290

- 2019학년도 미사용 차기이월 자금내역에 대해 문의하고 기획평가팀장(김대식)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기타이월에 대한 재원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함.
- 의원들 간 상호 논의한 결과 2019학년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결산(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문함.
 - 한정적인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전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야 함.

3.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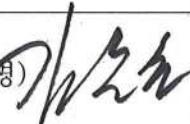
- 의장은 2020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해 의원들의 의견을 구함.
- 의원들 간 논의 끝에 김순호 의장, 강창우 의원, 최요한 의원을 추천하고 참석 의원 전원이 찬성함.
- 의장은 간서명 대표자로 김순호 의장, 강창우 의원, 최요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언함.

4. 폐회선언

- 의장은 2020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폐회를 선언함.

특이사항

7h	8월	28일	29	최 요한.
----	----	-----	----	-------

확인자	○ 의장 : 김순호 (서명) 	작성일 2020. 04. 17.(금)
	○ 부의장 : 강창우 (서명) 	
	○ 평의원 : 황덕현 (서명) 	
	○ 평의원 : 김세윤 (서명) 	
	○ 평의원 : 유철상 (서명)	
	○ 평의원 : 박용준 (서명) 	
	○ 평의원 : 하배진 (서명) 	
	○ 평의원 : 김현철 (서명) 	
작성자 (간사)		김대식 (서명) 